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가. 제안이유

-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사업 명시(안 제3조)
-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1조)
-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3]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5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4. 3. 14.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지원대상 확대 및 조문 명확화(안 제4조)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는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신생아도 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p> <p>2.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p>	<p>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p> <p><u>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u></p> <p><u>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2. 29.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사업 명시(안 제3조)
-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1조)
-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1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에서는 ‘지자체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산후조리시설 부재 등의 부족한 출산여건을 보완하여 모성 및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고 가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사업)에서 임신 및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우리 군의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내용)에서 군수는 출산 건강관리비를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 용도를 정함.
 - 용도: ① 산후 조리(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② 산모 건강관리(운동수강료, 모유 수유 클리닉 이용, 한약 처방, 산후 우울증 등의 의료비)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우리 군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산모를 적극 지원하여 출산 장려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가능하고 가정 친화적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 조례에 수반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¹⁾를 거쳤으므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2023. 11. 7. 평창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 협의 완료

**[신설]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 평창군)**

검토결과	협의 완료
검토의견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2)에 근거, 협의기준 및 그간 협의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원금은 협의사항과 같이 산후조리를 위한 용처*에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평창군 회신의견, ‘23. 10. 17.) 사용처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운동수강료, 모유 수유 클리닉 이용, 한약 처방, 우울증 등 의료비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필요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4]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5
----------	-----

제출년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행을 통해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다.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11조)

라. 개인정보의 보호 규정(안 제12조)

마. 시행규칙(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4. 01. 19. ~ 24. 02. 0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과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용품 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3. “출산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 검진”이란 예비부모 및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건강관리비(산후조리 및 산후 건강관리비 등) 지원
2.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3.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용품 지원 및 대여
 4. 예비부모, 임신부의 건강 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
 6. 출산 전·후 임신부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임신 및 출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건강관리비를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 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 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2. 산모 건강관리비(운동수강료, 한약처방 의료비, 산후 우울증 치료비,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등)

제6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① 출산 건강관리비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원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원금의 중복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국가 등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장 비치 등)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대리 신청자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임신 및 출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내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용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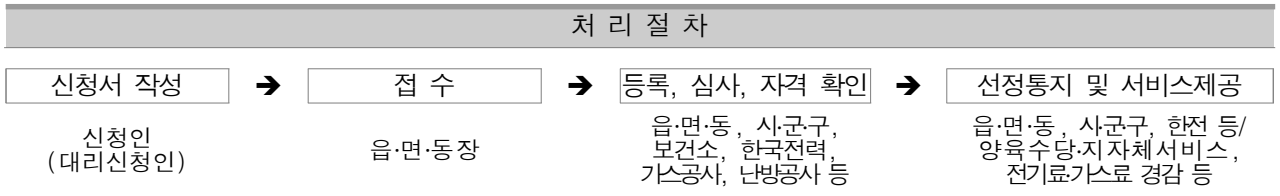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신청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출산 건강관리비 신청 업무의 위임	
대리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출산 건강관리비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및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또는 서류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 조리비와 건강관리료 지원(50만원 이내)
 - 산후 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산후 조리원 이용료)
 - 산모 건강관리비(한약처방, 운동수강료, 산후 우울증 치료, 모유수유클리닉 이용 등)
- ※ 임신부 등록 현황(2019-2023)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명)	152	111	105	101	92
임신부(명)	134	108	76	96	105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2021년 임신부 등록 저하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산출기초 : 임신부 100명 * 500,000원 = 50,000천원,

* 2024 당초예산 30,000천원 편성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년도 예산 편성(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건강증진과장 허 현
연락처	(033) 330 - 488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세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